

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[별표 4]

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(제11조제5항 관련)

장 비	수 량
1. 절연저항 측정기(500V, 100MΩ)	1
2. 절연저항 측정기(1,000V, 2,000MΩ)	1
3. 접지저항 측정기	1
4. 클램프미터	1
5. 저압검전기	1
6. 고압 및 특고압기	1
7. 계전기 시험기	1
8.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(적외선 실화상 기능을 갖추고 측정온도 250℃ 이상, 해상도 1만 픽셀 이상일 것)	1
9. 고압절연장갑	1
10. 절연장화	1
11. 절연안전모	1

비고: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.